

녹색인증 활성화방안 수립



8.11(수)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금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에서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 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10.8.11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은 녹색 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이다. 반면,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최소 428개(기관회원 등록기업 기준)로 녹색인증 신청기업(191개)의

2배 이상이다.

이를 위해 ①녹색산업용자 지원 확대, ②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녹색인증 추진 경과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기업·사업의 육성 및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녹색인증 도입배경으로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녹색프로젝트나 기업을 명확히 하여 녹색산업관련 자금유입시스템 실효성을 확보(금융권의 녹색산업투자를 용이케 할 목적)하는 것이다.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충하는 것이다. 녹색기술(10대 분야 256개 기술)·사업(95개) 대상 「녹색인증제」시행('10.4.14)하였다.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녹색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10.2.14)하는 것이다.

녹색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녹색기술 보유기업의 녹색사업화 능력을 제고한다.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은 '95 ~'05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4,500개 사업에 80억 유로(110억 달러) 지원하였다.

신청 · 인증현황은 '10.8.9 현재 294건(기술 248, 사업27 등) 신청, 이중 기술 56건, 사업 1 건 인증 및 전문기업 4개 확인되었다.

구 분	신청	최종결과		평가진행
		인증	불인증	
녹색기술 *	248	56	34	158
녹색사업 **	27	1	9	17
녹색전문기업 ***	19	4	1	14

녹색기술은 대기업 14개(57건), 중소기업 152 개(174건), 개인사업자 9개(17건) 등 총 175개 기업(248건)이 신청하였다. 녹색사업은 최종심의된 10개 중 1개사업(고출력LED조명기기보급, (주)지에이)만 인증. 불인증된 9개사업은 사업타당성, 녹색기술 활용성이 부족한 것이다.

녹색전문기업(4)은 OCI(폴리실리콘), 퓨얼셀 파워(연료전지열병합발전시스템), 비젼테크

(LED), 본우드(외장용 합성목재)이다.

문제점으로 인증수요기업들은 기존 벤처 · 이노비즈기업 등에 제공되는 세제 · 자금 · 판로 · 인력 등 인센티브보다 강화된($+a$) 혜택 기대하는 것이다. '10.8.9 현재 녹색기술인증 신청 중 소기업(152개) 중 벤처 · 이노비즈기업이 74%(113개)이다.

금융회사들은 녹색인증 투자대상 부족, 의무 대출비중 등으로 녹색금융상품 출시 곤란하다.

개선방향으로 녹색인증 수요기업 측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증 활성화를 유인한다. 녹색인증기업 지원 강화 및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인증 → 금융투자 → 기술개발 · 사업화 → 인증'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한다.

금번 대책을 통해 융자, 판로 · 마케팅, 기술사업화기반,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등 "4대 분야 총 26개 과제" 추진한다.

특히, 녹색인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관련 제도 개선 사항(녹색기술의 투자대상 포함, 추가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기타, 녹색인증정보의 금융권 연계 강화로 녹색대출시 전문성을 보강한다.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보면, 목표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

하는 것이다. 전략으로 R&D, 자금, 인력, 판로 등 녹색기술기업의 사업화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4대 과제로 녹색산업융자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기반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이다.

세부과제로 녹색산업융자지원 확대에서 신재생에너지등 보급용자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기술보증 중점 지원, 수출금융보험 지원이다. 판로마케팅 지원과제에서 정부발주공사 우대, 공공구매 국방조달 우대, TV 라디오광고료 일부 면제,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이다.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에서는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해외 고급 인력 도입 및 파견,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이다.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에서 R&D참여시 우대, 특히우선 심사 국제 출원 지원, 녹색기술 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지원, 녹색인증 국제 컨퍼런스 개최이다.

녹색산업 융자지원 확대과제에서는, 산업별 보급용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를 우대한다.

정책자금 용자로 녹색인증기업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용자잔액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대상 융자시 잔액기준(수도권 45억원, 지방 50억원) 또는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를 적용한다.

기술보증으로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율(0.5%p 감면) · 보증한도(일반 30억원 → 녹색기술 70억원, R&D 등 3억원 범위내 추가한도) 등 우대한다.

수출금융 · 보험으로 녹색인증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녹색인증기업의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 보증 특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특례신용대출 거래이행능력 평가시 가점(10점) 및 업체별 한도 확대(일반 20억원 → 녹색인증기업 30억원)한다.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녹색산업 10% → 녹색인증 중소기업 20%), 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우대(녹색전문기업)한다.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 · 마케팅 지원과제에서는, 정부발주공사 우대로 녹색인증기업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을 감면한다. 의무선금지급률 상향(30~50% → 40~60%), 입찰 · 계약보증금 감면(지급각서 대체)하는 것이다.

공공구매 · 국방조달에서 녹색인증기업의 조달청(10.8월), 국방부(10.11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1.5점 가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시 0.5점 가점한다.

방송광고료 일부면제에서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으로 KBS등 지상파3사 및 DMB의 TV · 라디오 광고료 70% 할인한다. 해외수출 · 마케팅에서 KOTRA(해외전시회, Green보증브랜드 등) 및 중진공(해외수출인큐베이터, 수출기업화 지원 등)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과제에서 병역특례로 교과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가점 부여한다.

해외 · 고급인력에서 녹색인증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기술인력 도입 및 석 ·

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한다.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기청, 1인당 2천만원 이내) 신청 시 가점(5점)한다. 출연연석·박사급 인력의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한다.

성능검사비용에서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신청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 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시험검사비용 50%를 환급(10.12월)한다.

녹색기술대상에서 녹색인증기업의 「국가녹색기술대상」참여시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한다. 국가녹색기술대상은 교과부 등 5개부처 공동 주최, 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기술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녹색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 대상으로 대통령상 등 포상한다.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과제에서 R&D 우대로 녹색인증기업의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8개)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녹색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R&D 수행기업의 간접비 사용용도에 녹색인증 신청사항 포함된다.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지원에서 녹색인증기업의 특허 조기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대상 포함(10.4월 既시행) 및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녹색인증기술의 특허출원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전문조사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및 전자출원시스템 이용 시 초고속심사대상(1개월내)에도 포함된다. 국제출원비용 지원에서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만원(디자인 200만원) 이내이다.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녹색인증기업 관련 기술공급자·수요자, 기술거래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지원(기업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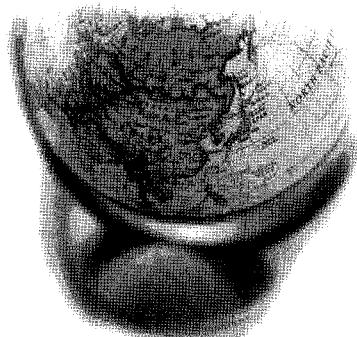
일정관리, 자문 및 비용 지원 등)한다.

국내는 수시개최(8월~), 해외는 한중 기술이전설명회(8월, 중국 상해), Enterprise Europe Network(EEN) 기술협력설명회(9월, 독일) 등이다.

글로벌사업화컨설팅으로 중국, 일본 등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한 현지 창업·마케팅, 수요기업 알선, 전문컨설팅 등 지원한다.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는 주요국 해외현지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수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10년 현재 중국·동남아·일본 3개 권역에 5개 기관 지정·운영된다.

국제컨퍼런스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창립 1주년 기념 「녹색성장 국제컨퍼런스」(11.6월)와 연계, 국내·외 유수투자·평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인증기업 Session"을 개최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10.6.16 출범. 녹색성장 이론적 체계화 및 녹색성장모델 전파 등 수행한다.



	추진과제	주관부처	추진일정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5개)	• 산업별 보급융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각부처	'10.12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적용	중기청	상시
	• 기술보증 중점지원 대상에 녹색인증 포함	기보	
	• 무담보 특례신용대출 등 수출금융지원 우대	수은	'10.8월
	• 녹색전문기업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무보	
판로·마케팅 지원 (10개)	• 정부발주공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기재부	'10.12월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녹색인증기업 우대	조달청, 국방부	'10.8월, '10.11월
	• TV·라디오 광고료 부분 면제(70%)	KOBACO	'10.9월
	• 해외전시회 참가시 녹색인증기업 우선권	KOTRA外	'10.10월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	'10.12월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녹색인증기업 우대	중기청외	
	• 녹색인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중기청	
	• 녹색인증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기청	
	•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KOTRA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참가우대	중기청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5개)	• 녹색전문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	교과부, 병무청	'10.12월
	• 녹색인증기업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중기청	
	•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지경부	
	• 중소기업 녹색인증 비용부담 경감	기재부, 지경부	
	•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	교과부外	'11.4월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6개)	• 국가R&D 참여 우대 및 인증수수료 지원	각부처	'10.12월
	• 특허우선심사(신청후 1개월까지 단축가능)	특허청	상시
	• 녹색인증기업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5점)	특허청	'10.12월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경부	'10.8월
	• 녹색인증기업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지경부	'10.9월
	• 녹색인증 국제컨퍼런스 개최(GGGI 연계)	지경부	'11.6월

후속조치 계획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시행 및 2차 활성화 방안 검토·추진한다.

10. 8월에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확정 및 시행한다.

'10. 8~9월에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T/F 운영 (기재부, 금융위, 지경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하고, '10. 9월에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확정한다.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9월, 녹색위) 및 인증제 feed-back 한다. '10. 하반기에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수립한다.

녹색인증 수요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기업단체·지자체 연계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단체 및 지자체를

활용하여 중점홍보 실시(기업대상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한다.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인증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분기별)를 통해 기업활동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병행한다.

대국민 녹색인증 인식제고에서 주요 일간지·방송을 활용해 녹색인증제 및 인증혜택 홍보를 강화하고, 설문조사·성공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접점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녹색문화 및 지식 등 창출·확산을 위한 전문가 및 녹색관련 생산·유통·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녹색커넥트포럼” 운영(지경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 '10년 하반기)할 것이다.

